



아름다운 변화 양주

【검토보고서】

2018.11.15.(목)
제299회 임시회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유연】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환경관리과장)

나. 제출일 : 2018년 10월 31일

2.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민감 계층 마스크 및 시설내 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2.15시행)

나. 입법예고 : 2018. 8. 31. ~ 2018. 9. 20.(20일간)

다. 부서협의 :

1) 협의기간 : 2018. 8. 14. ~ 2018. 8. 20.(7일간)

2) 협의결과

- 규제심사 : 대상이 아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요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국내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는 실정임

※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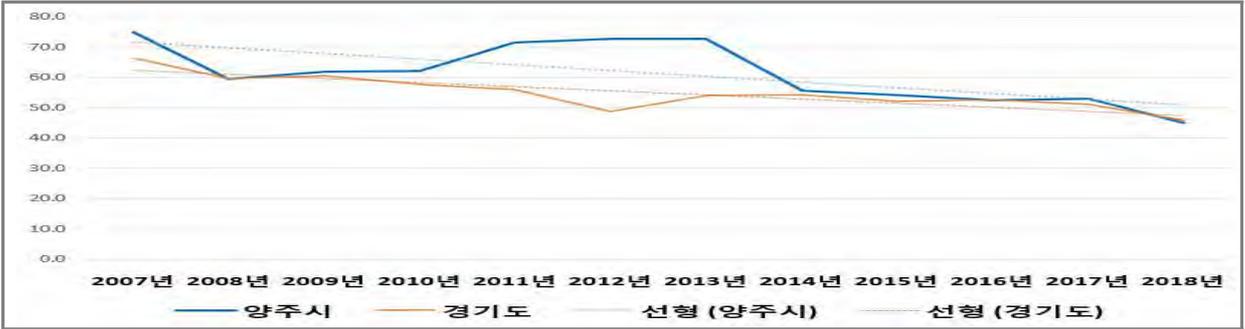
○ 이에 따라 양주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양주시 미세먼지 현황

1) 연평균 미세먼지 변화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양주시	74.9	59.6	61.8	62.2	71.7	72.8	72.8	55.8	54.3	52.5	52.9	41
경기도	66.3	59.7	60.5	57.8	55.9	48.8	54.1	54.3	52.2	52.6	51.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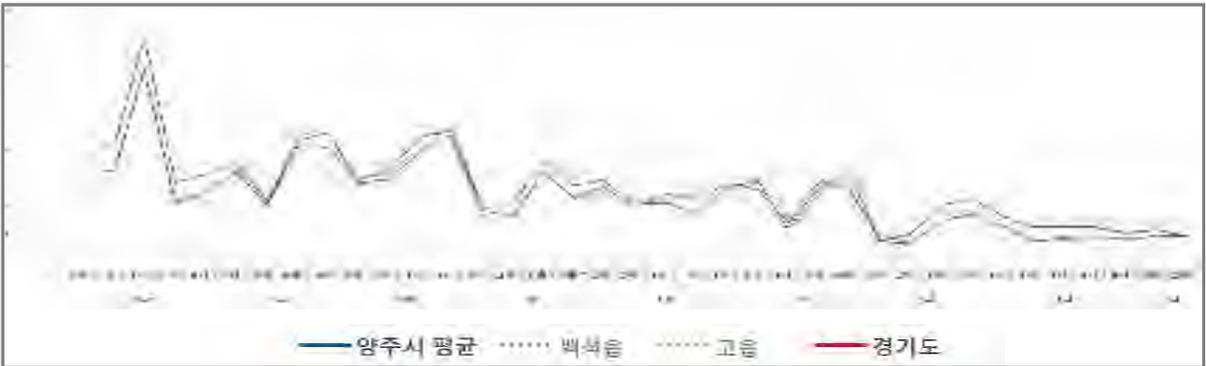
(2018년 9월 기준, PM-10 기준)



- 최초설치 2005.10월(광적)
- 지난 10년 동안의 미세먼지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 74.9μg/m³에서 2017년 52.9μg/m³로 10년간 29.4% 감소

2) 2018년 미세먼지 변화추이

(2018년 9월 기준, PM-2.5 기준)



- 지난 3월 이후 양주시의 미세먼지 수치는 경기도 평균 하회
⇒ 타 지자체에 비하여 개선 속도가 빠름
- 연초 건조시기 최고, 8, 9월에 최저 수치를 보임
⇒ 향후 11, 12월에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수치 상승 예상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총 5회

다. 조례의 구성

-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구분	내용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함
제2조	정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3조	시장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제7조	사업비의 지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사항을 규정함
제8조	양주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관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제10조	위원장의 책무	위원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에 해촉 사유를 명시함
제13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규정함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
제15조	수당 등	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
제16조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
제17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라.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질소산화물
 - 나. 황산화물
 -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제4조(사업자의 책무)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

5)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3. 그 밖에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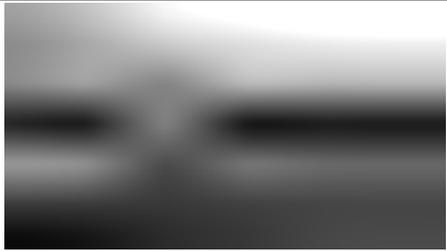
-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등의 항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음

6) 충전시설 보급 확대(안 제6조)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주시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현황

구분		백석읍측정소	고읍측정소	비고
설치년도		2005. 10월 (교체 2017년 9월)	2017. 9월	
소재지		백석꿈나무도서관 옥상 (백석읍 꿈나무로 199)	양주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고읍남로 205)	
측정 항목	오염 물질	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좌동	
	기상 요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좌동	
운영방법		연간 유지·보수 용역 실시 (장비 관리 및 측정망 운영)	좌동	
측정소 사진				

7) 사업비의 지원(안 제7조)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건강 취약계층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미세먼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자동차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캠페인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각각 규정하여 미세먼지예방을 위한 정책실현과 시민참여 근거를 마련 하였음

8) 양주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제8조(양주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주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4. 민감계층의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9)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5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하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미세먼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 나. 전문가, 교수 등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회 회의, 간사의 지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0)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안 제16조)

제16조(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미세먼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운영 현황]

- 구성인원 : 총 11명(남 2, 여 9) ※ 읍면동 각 1명 추천
 - 단장 : 반원 중 1인 선출(미세먼지 대책본부 내 시민참여대표 임무 부여)
 - 시민참여단 명단

연번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요경력	주소	비고
1	백석읍	유경자	62.10.19	여	시 생활개선회부회장	월암로175-22	
2	은현면	이영숙	60.01.03	여	의용소방대장 등	용암로213-23	
3	남면	여화선	62.11.25	여	대한적십자 남면봉사회	은남로119번길64-10	단장
4	광적면	한상천	70.01.06	남	농업(버섯재배)	부흥로930번길37-3	
5	장흥면	박효배	68.03.12	남	이장협의회장	일영로638	
6	양주1동	김경수	74.12.08	여	주부	부흥로1409-8	
7	양주2동	고선녀	54.12.27	여	동 생활개선회장	광사동673-2	
8	회천1동	박승주	66.04.10	여	전 주민자치사무국장	칠봉산로 392	
9	회천2동	권선화	70.03.27	여	부녀회	신우A)101-409	
10	회천3동	전주미	75.09.15	여	주민자치 사무국장	중흥A)102-305	
11	회천4동	이호목	62.04.05	여	주민자치위원	울정로 139번길141	

- 운영기간 : 2018. 7. ~ 계속
- 운영횟수 : 월 1회 이상
- 주요활동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사업 제시
- 시민참여단 발대식 : 2018. 7. 25.(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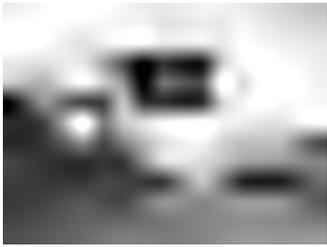
11) 시행규칙(안 제17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련 국비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미세먼지 시민 알림 시스템 운영

구 분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환경모니터링 상황실	미세먼지 신호등	비고
설치년도	2017년	2017년	2018년	
설치위치	양주시 광사동 744-4번지 (고읍지구 입구)	양주시청 환경관리과 사무실 내	총 4개소 (양주시청, 회천4동주민센터, 양주역 및 덕정역 앞 버스정류장)	
설 치 비	169백만원	21백만원	총 36백만원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시 대기질 현황 실시간 전달 · 각종 시정 정보 안내 · 비상 상황 전파 및 피해 예방 정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환경 데이터 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도 대기질현황 2) 양주시 대기질 현황 3) 국외 미세먼지 흐름 4) 전광판 운영 상황 · 데이터 운영 기반 구축 (전기 및 통신) · 타 분야의 환경 데이터 표출 기반 구축을 위한 호환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상태 이미지화 → 효과적인 대기질 알림 서비스 제공 · 좁은 부지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대기질 상태 전달 가능 · 수치가 아닌 이미지화로 대기질을 전달하여 정보 전달력 강화 	
운영방식	[유지보수 용역] · 업체명 : (주)서울기전 · 소재지 : 파주시 소재 · 담당자 : 최선욱 · 연락처 : 031-901-6307 010-5345-1339	[유지보수 용역] · 업체명 : (주)에이번 · 소재지 : 마포구 소재 · 담당자 : 박정복 · 연락처 : 02-585-5131 010-9594-3131	[유지보수 용역] · 업체명 : 노아엘이디 · 소재지 : 울산시 소재 · 담당자 : 김상수 · 연락처 : 052-275-4194 010-8483-0202	
설치사진				

주요 미세먼지 배출업소 현황

□ 고형연료사용시설 현황

연번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사용연료	사용량 (톤/연)	비고
1	애니테크 상수지점	임병곤	남면 운하로 66-14	SRF(비성형) BIO-SRF(비성형)	12,960	
2	(주)이에스 비오비	대표이사	남면 화합로 610번길 30-180	SRF(비성형),	14,040	
3	(주)한진	이종덕	광적면 덕도리 566번지	BIO-SRF(비성형)	1,056 528	고형연료 사용 신고 미이행
4	세계섬유(주)	허영	남면 현석로 785번길 322	BIO-SRF(비성형)	1,584 576	고형연료 사용 신고 미이행

□ 원목보일러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종	종별	배출시설	비고
1	(주)대흥섬유	김순희	은현면 강변서로 59	섬유 임가공	3	원목보일러 (116kg/시*1기)	
2	(주)경호섬유	조성대, 윤한호	남면 화합로 610번길 102-30	섬유 임가공	4	원목보일러 (110kg/hr*1기)	
3	(주)한결섬유	대표이사	칠봉산로286번길 32 (봉양동)	섬유 임가공	4	원목보일러 (130kg/hr*1기)	
4	(주)영송실업	한일수	남면 화합로 465번길 58	섬유 임가공	3	원목보일러 (130kg/hr*1기)	
5	경서섬유	김의석	은현면 용암로 238-1	섬유 임가공	3	원목보일러 (92kg/hr*1기)	
6	범한텍스타일	한혜정	화합로1325번길 399 (덕정동)	섬유 임가공	4	원목보일러 (100kg/hr*1기)	
7	선일섬유	황의석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32	섬유 임가공	3	바이오매스 사용시설 (80kg/hr*1)	목재칩
8	엘림섬유	문성영	은현면 은현로 312번길 264-25	섬유 임가공	3	바이오매스 사용시설 (140kg/hr*1)	목재칩

□ 소각시설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리 시설	처리량 (톤/일)	영업대상폐기물	비고
1	유일섬유	홍봉기	광적면 부흥로 881-30	소각시설 (180kg/hr*1기)	3.6	폐종이류, 폐섬유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2	(주)세계섬유	허삼	남면 경신리 161-2,4,10,1 1,13,14	소각시설 (300kg/hr*1기)	6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종이	
3	(주)골드오카드	신동현	남면 삼일로 485번길 131	소각시설 (195kg/hr*1기)	3.9	폐섬유, 폐종이, 폐목 재, 폐비닐(PE)	
4	(주)영신물산	조창섭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2	소각시설 (1,200kg/hr*1기) (1,800kg/hr*1기)	72	폐합성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피혁류 , 폐섬유류, 폐종이류	
5	(주)협성그룹	권태석	남면 경신리 68-2,-9,-13	소각시설 (200kg /hr)	3.6	폐섬유, PE	
6	(주)한국이엔지	대표이사	봉양동 362-7	소각시설 (195kg/hr*1기)	4.095	폐지, 폐섬유, 폐합성 수지	
7	(주)유림섬유	유인호	봉양동 411-7,572-2 4,-28	소각시설 (180kg/hr*1기)	3.6	폐섬유, 폐합성수지(PP,PE)	
8	에이스섬유	이상백	은현면 도하리 산54, 336	소각시설 (200kg/hr*1기)	1.6	폐섬유	
9	동보섬유	현동만	은현면 봉암리 124	소각시설 (190kg/hr*1기)	4.18	폐지, 폐섬유, 목재, 합 성수지	
10	삼승텍스타일(주)	채성영	은현면 은현로 517번길 17-18	소각시설 (195kg/hr*1기)	4.68	폐섬유, 폐합성섬유	
11	(주)성진텍스타일	김영옥	은현면 용암로 237	소각시설 (195kg/hr*1기)	3.9	폐종이류, 폐섬유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12	대명텍스타일 주식회사	이창근	은현면 화합로 100	소각시설 (195kg/hr*1기)	3.9	폐종이류, 폐섬유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13	에스앤이에너지 (주)	한상진	남면 상수리 248-1, 산37-1	소각시설 (3,850kg/hr*1기)	92.5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수슬러지, 폐종이류	
14	(주)애니테크	임병곤	남면 상수리 9-2	소각시설 (2,600kg/hr*1기)	62.4	폐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섬유, 폐목재, 폐피혁, 건설폐기물(가연성), 동식물성유지, 말린오니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 저녹스버너란?

- 연료 및 공기 혼합특성을 조절하여 연소강도를 낮추고 연소초기 영역의 산소 농도와 화염온도를 낮추어, 열에 의한 NOx 및 연료의 질소 성분에 의한 NOx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춘 버너를 말함

□ 지원개요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기존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시설은 제외)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가능
- 질소저감량이 높은(B-C유 > 경유 > LNG) 사업장을 우선 지원
- 시설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4,004~14,294천원, 국비 71.4%, 시비 28.6%)

□ 시설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용 량 별	금 액	용 량 별	금 액
0.3톤이상 0.5톤미만	4,004	5톤이상 6톤미만	10,500
0.5톤이상 0.7톤미만	5,502	6톤이상 7톤미만	11,102
0.7톤이상 1톤미만	6,202	7톤이상 8톤미만	11,900
1톤이상 2톤미만	6,706	8톤이상 9톤미만	13,202
2톤이상 3톤미만	7,196	10톤 이상	14,294
3톤이상 4톤미만	8,904	※ 1톤 = 619,000kcal로 산정	
4톤이상 5톤미만	9,506		

□ 추진실적 및 2018년 계획

구 분	예산액 (천원)	저녹스버너 교체수(대)			비 고
		계	보일러 용량 0.3톤이상~5톤미만	보일러 용량 5톤이상~10톤 미만	
계	881,776	91	83	8	
2014년	365,400	38	34	4	
2015년	116,200	15	14	1	
2016년	157,696	22	20	2	
2017년	121,240	16	15	1	
2018년	121,240	15	추진중		

□ 사후관리

-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2년 이내의 사업장
 - 보조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 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설비회수를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은 전부 반환하여야 함.(※ 단,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 탈거이유가 명백하여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 : 38개소 (2016년 22개소, 2017년 16개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8.1. ~ 12.
- 소요예산 : 24,000천원 (2017년 본예산 대비 : 변동없음)
- 사업대상 및 내용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
-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16만원을 지원

□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 ①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또는 세입자(임대주택에 한함)
- ② 주택소유주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 순서>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주택)
- ④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 추진실적

(2018. 7월말 기준.)

구 분	지원대상자	신청자	사업추진중	지급완료수	비고
건 수	150	150	-	150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여 건강 피해 예방
- 사업기간 : 2018. 1. ~ 10.
- 사 업 비 : 103,412천원
 - ※ 본예산 61,412천원 (도비 30%, 시비 70%), 1회추경 42,000천원(시비 100%)
- 사업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총 39,220명 (총 152,703매)
 - 1차 보급 : 총 11,681명 (7세 이하 어린이 10,681명,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
→지급매수 70,086매 (1인당 6매)
 - 2차 보급 : 총 10,139명 (65세 이상 어르신)
→지급매수 30,417매 (1인당 3매)
 - 3차 보급 : 총 17,400명 (초등학생 13,609명, 호흡기질환 환자)
→지급매수 52,200매 (1인당 3매)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 전 미세먼지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 등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추진내용

- 요구성능 : KF80 등급 이상, 식약처 고시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 호흡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며, 입과 코 등을 충분히 덮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함
 - 코 지지대가 있어 코에 밀착되고, 밀착에 따른 피부손상이 없어야 함
 - 귀걸이 끈은 조절이 쉽고, 귀에 통증이 없도록 부드러워야 함
 - 필터는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공인기관 검증 섬유로 만들어야 함
- 미세먼지 마스크 안전교육 및 배포
 -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소 및 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전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전달 후 보급

□ 미세먼지 마스크

